

# 2022 조사활동보고회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0:00
-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 목 차

제1장. 조사활동 현황 .....	3
1. 위원회 사건 현황 .....	4
2. 진정사건 처리현황 .....	4
3. 직권조사사건 처리현황 .....	5
4. 종결사건 현황 .....	6
5.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결과 .....	7
제2장. 위원회 성과사례 .....	8
1. 자해사망 .....	9
2. 사고사 .....	18
3. 타살 / 병사 .....	25
4. 전사 / 직권조사 .....	33

# 제1장 조사활동 현황

## 차 례

- 1 위원회 사건 현황
- 2 진정사건 처리현황
- 3 직권조사사건 처리현황
- 4 종결사건 현황
- 5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결과

## 1 위원회 사건 현황

□ 진정사건 1,787건과 직권조사사건 21건(총 1,808건)에 대해 조사 진행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를 목격한 사람, 또는 목격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인 진정사건은 1,787건

○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사망사고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결정한 직권조사사건은 21건

## 2 진정사건 처리현황

□ 총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275건 종결, 512건 본조사 진행 중

□ 진정사건 처리현황(위원회 출범 ~ 2022. 9. 15.)

(단위 : 건)

구분	내용별		건수 (1,787)
종결	계		1,275
	조사개시 전 종결	소계	130
		각하	84
		취하(보고)	46
	조사개시 후 종결	소계	1,145
		진상규명	714
		기각	152
		진상규명불능	62
		각하	66
		종료(취하)	151
진행중			512

### 3

## 직권조사사건 처리현황

### □ 위원회 직권조사 시작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21. 4. 13. 개정)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 위원회 ‘직제규정’,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직권조사팀 구성 및 직권조사 시작(2021. 8.)

### □ 직권조사사건 처리현황(2021. 8. ~ 2022. 9. 15.)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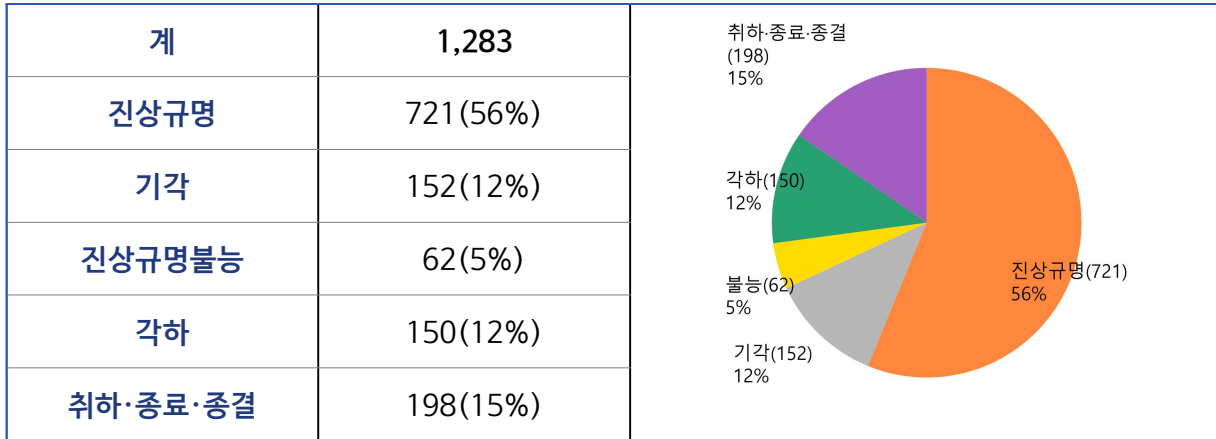
구분	내용별		건수 (21)
종결	계		8
	조사개시 전	종결보고	1
	조사개시 후	진상규명	7
진행중	계		13
	사전조사		5
	조사개시		8

## 4

## 종결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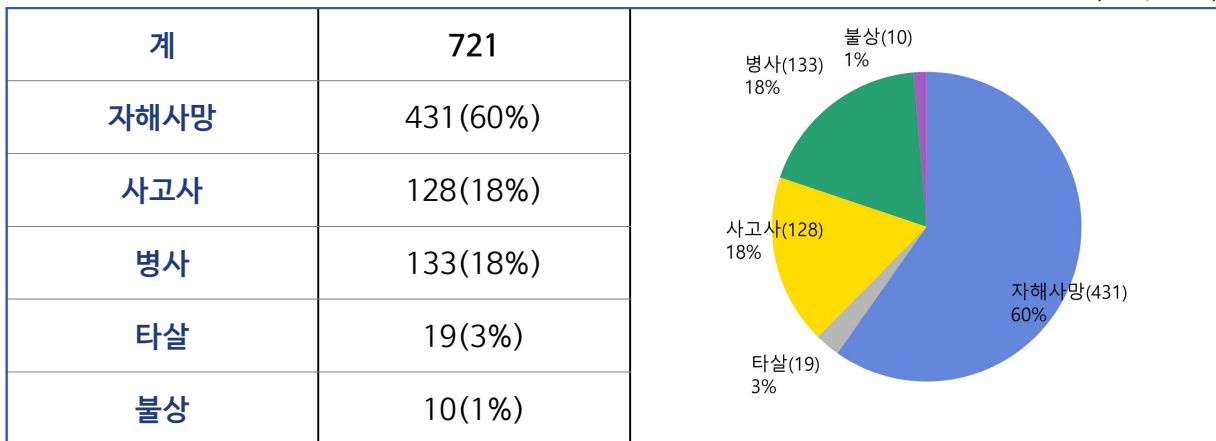
### □ 결정유형

(단위 : 건)



### □ 진상규명 결정사건 사망원인

(단위 : 건)



## 5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결과

### □ 전사로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단위 : 건)

계	결정	보류	기각	심사중
10	81)	-	-	2

\* 22-21차(2022. 8. 26.) 심사 결과까지 포함

### □ 순직으로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단위 : 건)

구분		계	결정	보류	기각	심사중
기관별	계	590	395	12	21	162
	국방부	562	371	12	20	159
	경찰청	22	19	-	1	2
	법무부	6	5	-	-	1
사망원인별	계	590	395	12	21	162
	자해사망	393	258	6	10	119
	사고사	104	72	5	10	17
	병사	71	51	1	-	19
	타살	13	8	-	1	4
	불상	9	6	-	-	3

\* 22-21차(2022. 8. 26.) 심사 결과까지 포함

1) 위원회가 '전사'로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한 8건 중 진정 제736호 윤○○ 사건에 대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순직 I 형(2-1-17)'으로 결정하였음.

## 제2장 위원회 성과사례

### 차 례

- 1    지해사망 ..... 탁경국 위원
- 2    사고사 ..... 이선희 위원
- 3    타살 / 병사 ..... 이 호 위원
- 4    전사 / 직권조사 ..... 오병두 위원



# 1. 자해사망

탁경국 위원\*

## 사 건 명

가 진정 제1008호 김하사 사건

나 진정 제1073호 안이병 사건

다 진정 제1202호 전하사 사건

라 진정 제1322호 이이병 사건

\* 상임위원, 변호사

- 군, 계모와의 갈등과 야간고등학교 학자금 문제 등으로 염세 비관
- 위원회, 상급자의 상습적인 구타 및 금전 갈취가 원인이라고 밝혀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1978. 10. 12. 해병대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79. 4. 23. 해병 ○사단 ○연대 ○대대 11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9. 12. 02:00~03:30 중대 순찰 근무 중 소속대 내무실 1층 침상에서 M16 소총으로 총구를 자신의 흉부에 대고 격발하여 사망한 사건이고, 당시 수사에서 군 헌병대는 가정 문제 등 신변비관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망원인이 타살 또는 사고사가 아닌지, 자해사망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구타·가혹행위 등 사망의 원인이 병영 부조리와 관련이 있는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망인은 1979. 9. 12. 새벽 순찰 근무 중 소속대 복도 창가에 세워둔 타인의 M16 소총을 이용하여 소속대인 내무실에서 총기로 자해사망한 것이고, 사고사나 타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직속 선배인 조○○ 하사의 괴롭힘, 구타, 금품갈취를 당하였는데, **사건 당일 조하사가 영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근무 전인 망인에게 금전을 갈취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망 이후 관물대 조사 중 망인의 수첩이 발견되었고, 이 수첩에는 조하사가 망인에게 돈도 많이 갈취하고 PX 외상값 이런 것을 대신 갚게 하는 방법 등 조하사의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3소대 내무반장의 진술에 의하면 **조하사가 망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집합시켜 구타하고, 금전을 갈취하였는데, 망인이 부대 주임상사에게 조하사의 악행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자, 부대 주임상사가 조하사를 불러 질책하였고, 사건 당일 조하사가 망인을 욕박지르면서 ‘너 때문에 오늘 하사관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따 새벽에 다 집합시켜!’ 라고 하였는데, 망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하사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괴로움에 자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화기소대 2분대장, 망인의 후배 부사관 등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979. 11. 23. 조하사의 군법회의 판결문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2달 전인 1979. 7. 4.과 25. 망인을 포함한 약 10여 명의 후배 하사관들을 집합시켜 5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둔부를 5~10대가량 폭행하고, 이 기간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후배 하사관들에게 수 회에 걸쳐 105,400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평소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 문제와 편입 예정인 야간고등학교 학자금 문제 등으로 세상을 비관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보았으나, 망인은 **군 복무 중 약 2개월에 걸쳐 조하사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망인이 계모와의 갈등, 학자금의 문제로 자해사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이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군에서 만연한 폭력, 금전 갈취 등 병영 부조리가 주된 원인이 된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유족들은 망인이 계모와의 갈등, 고교 진학 문제라는 왜곡·은폐된 **헌병대 수사결과로 인해 단순히 망인의 나약함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수치스럽게 지내 온 만큼 이제라도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 군, 복무 부적응 및 사고 당일 실시되는 100km 행군에 대한 두려움
- 위원회, 구타·가혹행위 만연한 가운데 행군 전 폭행당한 사실과 유서 없앤 사실 밝혀

### 1) 군 수사결과

군 헌병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단 ○○연대 ○대대 9중대 3소대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1989. 2. 16. 군 복무 부적응 및 사고 당일 실시되는 100km 행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내무반에서 취침 중 화장실로 가 판초우의 끈으로 목매어 자해사망한 사건이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과 같은 부대 동료로서 1989. 4.경 분대장 교육대에 입소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망인이 사망 전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망인의 유서를 부대에서 없앴으며, 망인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걸맞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과거 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전입 신병으로 군 복무 부적응 및 사고 당일 실시되는 100km 행군 두려움 등으로 내무반에서 취침 중 화장실 천장 서까래에 판초우의 끈으로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대원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부대에 만연하였고, 망인의 유서 또한 사후 발견되었으나 부대 간부에 의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당시 망인과 함께 생활관을 사용했던 소속부대 선임병의 진술을 통해 과거 100km 행군을 앞두고 폭행을 당했으며, 망인 사망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대 간부는 망인의 유서를 없앤 것이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망인이 행군을 앞둔 과정에서 부대 내 만연하였던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자해사망한 점과 망인의 유서를 당시 소대 간부들이 소실한 것을 밝혀내어 종래 단순 ‘자살’로 기록되어 있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군의 관련 기록을 변경한 것에 의의가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이후 망인의 동생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동일 대대 11중대) 복무기간 동안 심적 트라우마를 견뎌야 했다.

진정인은 망인의 부대원으로서 과거 사건에 대한 사실을 분대장 교육을 받으며 들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약 30여 년이 지난 후 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정하였다. 이러한 진정을 통해서 위원회는 당시 부대 간부들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조사하여, 폐쇄적인 군 문화로 인해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2. 21.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군, 불우한 가정환경과 희망하던 제대가 좌절된 것을 비판
- 위원회, 강압에 의한 장기 복무와 ‘숫 굶기’, ‘별목’ 등 후생사업 노역에 동원

### 1) 군 수사결과

군단 헌병대는 당시 수사에서, 이 사건을 육군 ○사단 ○연대 7중대 소속 망 전○○이 전역을 희망하였으나 전역치 못함을 비판하여 자해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망인은 동생 전○△ 대신 1955. 1. 5. 입영하여 1960. 5. 20. 사망하기까지 총 64개월을 대리 복무하였다.(\* 병적 정정을 통해 실제 복무자를 전○△에서 전○○으로 정정함.)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 군에서는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지만, 당시 망인은 부인과 어린 딸이 있었고, 전역도 곧 한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망인이 자해사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이 입대한 1955년은 ‘군내 부정의 대표적인 해’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군내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시기로, 군의 부족한 경제원을 예하 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기 위해 소위 ‘후생사업’ 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후생사업’ 에 동원될 노동력(勞動力) 확보를 목적으로 병 복무기간 규정(3년)을 위반하고 내려진 소속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명령에 따라 사병들이 5~6년 이상을 복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군은 예하 독립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사병 만기 전역 발령권을 부여(1954. 7. 13.)함으로써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사병인사에 대한 권한을 악용, ST(하사관 후보생)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전역을 희망하는 병사들에게 ‘굶기기’, ‘구타’ 등의 방법을 동원, 강제적으로 장기복무를 지원하게 하였고, 이렇게 군 복무가 연장된 병사들은 ‘숫 굶기’, ‘별목하기’, ‘약초(나물) 캐기’ 등 군의 ‘후생사업’ 노역(勞役)에 동원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은 사병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하사관 후보생이라는 제

도를 이용하여 하사로 진급을 시킨 후, 전역 직전 하사해임 및 병장으로 강등시켜 병으로 전역을 시키는 편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즉, ‘이병 → 일병 진급 → 상병 진급 → 하사관 후보생(ST) 진급 → 하사 진급 → 하사 해임(강등) → 병장 전역’ 순으로 진급 및 해임(강등)되어 최종 병장으로 전역시켰다. 명예를 생명으로 삼는 군에서 강등은 가장 치욕적인 명예훼손이다.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은 ‘군 생활을 6년간 했지만, 하사계급이라도 달고 제대를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설명도 없이 하사에서 병장으로 강등시켜 제대를 시켰다’ 며, 본인들이 언제, 왜 강등되어 병장으로 전역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즉, 당시 후생사업에 동원되어 장기복무의 피해자가 된 사병들은 계급강등이라는 불명예마저 강요당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망인은 소속부대의 강제 장기복무의 문제점과 후생사업 노역(勞役) 동원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군내 처우가 혹독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36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지만, 소속부대 지휘관의 장기복무 강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총 64개월여를 복무하게 되었고, 이 기간 망인의 지속적인 전역희망에도 전역을 시켜주지 않자 ‘제대를 할 수 없다’ 는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보초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1955년에 입대한 망인은 혹독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군내 처우를 감수하며 36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지만, 소속부대 지휘관의 강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총 64개월여의 장기복무를 하게 되었고, 전역을 희망하였으나, 끝내 전역을 시켜주지 않자 가족(처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감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군 지휘관의 인사규정 위반 및 지휘권 남용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조차 ‘규정상 사병이 5년 이상을 복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복무기간 이외에 예하 부대 차원의 상황은 당시 실제 복무를 하였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었다. 이들의 억울함에 대해 과거 군의 사병인사 권한 남용의 폐해(弊害)에 대한 사과 및 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계급복권 등을 통한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군, 공수교육에 대한 공포, 평소 지병인 축농증·빈혈 등 비관
- 위원회, 신병에게 과중한 업무와 중대장의 지속된 폭언 및 질책을 원인으로 밝혀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1982. 7. 15. 입대, 같은 해 9. 1. ○사단 ○차량화보병대대 본부중대 보급서기병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1. 6. 09:50경 본부중대 옥상 물탱크실에서 물탱크 밸브에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다.

군 기록에는 망인이 공수교육의 공포감과 자신의 지병인 축농증과 빈혈 증세 등을 비관, 군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자살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건강했던 동생이 전입 2개월 만에 옥상 물탱크 밸브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군의 설명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타살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하여 망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 소속 부대<sup>3)</sup>는 본부중대를 제외한 3개 중대 중 1개 중대가 상시 영외에서 숙영한 관계로 타 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수품의 분실·망실 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본부중대 보급서기병인 망인은 선임으로부터 업무 인계 및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단독으로 군수품의 보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혈질인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질책을 당하며 괴로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망 전날 일과 종료 직전 중대장이 다음 날 아침 동계피복 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1982. 11. 6. 08:50경 망인은 소속대 옥상 물탱크 밸브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해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중대장으로부터 강도 높은 폭언과 질책을 받았는데, 일부 본부중대원들이 현

3) 망인 소속 ○차량화보병대대는 1980년 북한 특수 ○군단의 후방침투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대로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한 야외숙영 훈련이 많았음.



병대 수사 과정에서 중대장의 폭언과 구타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군에서는 중대장에게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공수교육에 대한 공포감과 지병인 축농증과 빈혈 증세 등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작·은폐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망인은 본부중대 보급서기병으로 배치되자마자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중대장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폭언과 질책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하였고, 당시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망인이 지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한 사실을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5. 23.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2. 사고사

이선희 위원\*

### 사 건 명

- |   |                        |
|---|------------------------|
| 가 | 진정 제1206호 유일병 사건       |
| 나 | 진정 제1454호 박이병 사건       |
| 다 | 진정 제1769호 최이등중사(병장) 사건 |

\* 비상임위원, 변호사

## 가 진정 제1206호 유일병 사건

- 군, 어지럼증·두통·구토로 입원 후 야전병원으로 후송, 뇌종양으로 병사
- 위원회, 구타에 의한 만성경막하혈종 및 두개강 내 혈종으로 사망 추정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1964. 6. 4. 입대, ○사단 ○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던 중, 1965. 1. 13. 어지럼증, 두통, 구토로 제○의무대대에 입원, 같은 달 15. 전환반응<sup>5)</sup>으로 제○야전병원으로 후송, 같은 달 22. 제○○○후송병원으로 후송, 같은 해 2. 17. 제○○육군병원으로 후송, 같은 달 24. 제△△육군병원으로 후송, 1965. 2. 24. 23:00경 사망하였으며, 매화장보고서에 ‘뇌종양’으로 기재, 일반사망인 병사로 처리한 사건이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한 망인이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망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과거 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64. 11. 15.부터 전환반응의 증세를 보였으며, 최초 제○의무대대에 1965. 1. 13. 입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제○○육군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날인 1965. 2. 24. 사망하였다.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종양’이다. 그러나, 망인의 외래환자 진료부에 ‘행동과 말이 느려 여러 차례 구타당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육군병원에서 이루어진 사후평가 기록에는 ‘당시 brain tumor(뇌종양)로 생각되었으나, 이후 chronic subdural hematoma(만성 경막하 혈종)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trauma(외상)가 발생하고 약 6개월 뒤인 시점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intracranial mass due to hematoma(두개강 내 혈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경외과 전문가인 위원회 자문위원은 ‘구

5) 억압된 충동이 특정한 감각이나 운동 계통의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히스테리성 신경증의 한 유형임.

토, 어지럼증, 두통 등과 같은 망인의 증상이 두부 외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됨’ 이라고 의학 자문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부대에서 어떠한 구타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타, 구토, 어지럼증, 전환반응, 만성 경막하 혈종 또는 두개강 내 혈종 등의 기재 사실로 보면, 망인의 사인은 두개강 내 혈종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과거 망인의 부대 동료들은 망인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 망인이 구타당한 사실, 구토와 어지럼증, 전환반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약 45일 동안의 치료과정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두개강 내 혈종으로 사망한 사실 등은 군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6~1997년에 실시된 육군본부 병·변사자 일괄 재심사 당시, 이 사건은 사인이 뇌종양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제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3. 21.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나 진정 제1454호 박이병 사건

- 군, 영내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익사
- 위원회, 중대장의 지시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보충역으로 1972. 7. 29. 신병교육대에 입대, 같은 달 31. 교육훈련 중 오침 시간에 중대장 인솔하에 소속 부대 내 저수지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다가 익사한 사건이다.

군은 1972년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나, 1973년 (구)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유가족에게 순직 무효를 통지하였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군 당국은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이를 번복하여 일방적으로 무효로 처리하였는바, 육군본부의 순직 무효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아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망인은 훈련 중 상관의 지시를 받고 준비운동조차 하지 못한 채 부대 내 저수지에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간 후 입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이는 망인이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이었고, 병영 생활의 명랑화와 정서 생활을 위한다는 상관의 지시하에 저수지에 입수한 것으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공무이며, 망인은 이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 사망 당시 육군본부와 국가보훈처가 망인에 대하여 순직 결정 및 추서에 따른 진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던 사실을 통하여서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망인의 사망 당시 군에서는 망인을 1972. 8. 9. ‘순직’ 대상자로 결정, 국가보훈처도 같은 해 9. 1.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듬해인 1973. 5. 8경, 망인

사망 당시 적용하였던 「병역법」 제60조(실역복무자의 처우) 단서 조항<sup>6)</sup>을 근거로 망인의 순직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정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종래 망인과 유족에게 부여되었던 보상금 및 연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처우를 회수 및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유족이 육군본부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군 당국은 스스로 정정한 망인의 순직 무효결정을 배제한 채 망인이 ‘순직’ 한 것으로 또다시 반복하여 사망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행정적 착오를 지속해 왔으나, 망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 및 보상은 하지 않았다.

(구) 「병역법」 및 「군인사법」과 달리 현행 같은 법률은 보충역을 군인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위소집의 경우 처우도 현역과 같이 보상한다고 명문화하였으므로 보충역으로 방위소집된 망인에 대하여 현역과 같이 처우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상적인 소집 계획 경로에 따라 방위 소집되어 교육 중인 보충역 신분인 망인에 대하여도 현역과 같이 처우하는 것이 현행 「병역법」 및 「군인사법」 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위원회는 망인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중대장 인솔하에 훈련병들의 병영생활 명랑화 등 부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대 내 저수지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직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물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은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위원회 조사를 통해 망인은 부대 내에서 중대장의 인솔하에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망인의 사망구분은 당시의 법령 및 행정적 처리 미비로 인하여 유가족에게 여러 차례 반복되어 결정 및 안내되었고, 현재까지도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산 등에서 제대로 정정되지 않은 채 행정적 착오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6) 舊 「병역법」 제60조 (1973. 10. 10. 법률 제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군, 복무 중 두부 타박상으로 사망 후 단순 병사 처리
- 위원회, 강한 외력이 두부에 작용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뇌진탕으로 결론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 망인은 1952. 4. 23. 입대하여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6. 10. 30. 상세 불상의 사고로 인한 두부 타박상(뇌진탕)으로 제○이동외과병원에 후송된 즉시 사망하였다.

군은 망인의 사망을 단순 병사로 처리하였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이 군 복무 중 병원에서 실려갔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 이외에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망인의 병적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망인의 제적등본상 성명(최○○)으로 검색하였을 당시에는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생년월일, 본적지 등으로 검색하였을 때 1956. 10. 30. 병사한 최△△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순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판단하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이 상이하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진정인 면담 결과, 망인을 집에서는 ‘최△△’라 불렀는데 호적상에는 ‘최○○’로 올린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주최공△△지묘(海州崔公△△之墓)’라고 기재된 묘비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의 표와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상 최○○의 인적사항과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최△△의 인적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생년이 차이가 있고, 어머니 성명 일부가 상이하나, 상이한 부분이 단순 오기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외에 사망일자, 본적지, 사망장소 등이 일치하여 최○○과 최△△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최△△의 병적자료를 근거로 최○○의 사망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망인의 뇌진탕 발생원인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대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화장보고서 이외에 관련 기록(60년 이상이 경과)이 미존안으로 확인되었고, 대인조사를 위해 망인의 군복무 동기와 군의관 등 총 19명에 대한 생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중 18명은 사망하였거나 공부자료 추적 불가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생존으로 확인된 동기병 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전역 후 이미 60년 이상이 경과하여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본 사망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화장보고서 사망원인 기재란에 ‘당 병원에 입원 중 즉시 사망하였음(병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진단 기재 사항에 ‘타박상 두부(뇌진탕)’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병원 이송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강한 외력이 두부에 작용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고 당시 망인이 군인 신분으로 영내에 머물러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영내에서 발생한 불상의 사고에 의해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의 진정인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국방부에 망인 병적자료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부존재 등의 사유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인적사항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제적등본상 성명만으로 조회하였을 때 망인의 병적기록이 검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에서 진정인에게 망인의 병적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왔던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출생신고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실제 성명, 생년월일이 호적 등 공부(公簿)와 상이한 경우가 많았던 1970년대 이전의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면, 본 사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행정착오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적사항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6. 27.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3. 타살 / 병사

이호 위원\*

#### 사 건 명

가 진정 제937호 김상병 사건

나 진정 제1103호 이상병 사건

다 진정 제1609호 여이병 사건

\* 비상임위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가 진정 제937호 김상병 사건

- 군, 사소한 시비 끝에 칼빈소총으로 위협하다 부주의로 총기사고 발생
- 위원회, 소부대 간 과도한 경쟁 및 병사와 초급간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원인

### 1) 군 수사결과

망인은 1968. 3. 15. 입대, 1970. 8. 18. 16:30경 대공사찰 지원근무 중 간부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군은 망인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였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상관인 조○○ 하사가 망인에게 총을 겨누고 오발로 총을 발사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을 사소한 시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타살 정황을 명확하게 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공작대 대원으로 대공사찰업무를 맡고 있었고, 담당 지역인 해당 마을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을 귀대시키려 온 편의대 소속의 조하사를 박치기 및 몽둥이로 구타하였고, 이에 조하사가 장전된 소총으로 망인을 위협하며 발사하여 하복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① 망인이 지시를 불이행하고 위해행위를 가한 것은 일부 사실로 인정되나, 망인의 위해행위와 조하사의 총기 발사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성과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조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법원 역시, 망인의 위해에 대해 조하사가 취한 행위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② 조하사가 망인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이 오발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당시 총기관리가 탄창을 휴대하기는 하지만 총에 탄창을 끼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간부가 개인의 신상에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기본적인 총기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더구나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사람을 조준하여 격발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포함되었다. ③ 더욱이, 망인은 공작대 소속으로 매복이나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하사는 편의대에 소속되어 적군의 부대 위치를 파악하는 업

무를 담당하였는데, 조하사가 망인을 쏜 뒤, ○○봉으로 올라가서 공작대 대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 두 부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망인과 조하사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으로, 망인의 위해행위를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군 재판을 통해 조하사가 총기를 다루는 업무상 주의 임무를 태만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점과 격발행위가 급박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7. 25.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군, 영내 개울에서 몸을 씻다가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
- 위원회, 선임병의 폭행에 의한 미주신경성 쇼크사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1986. 4. 2. 입대, ○포병여단 ○○○포병대대 ○포대에서 통신 교환병으로 복무 중, 1987. 7. 5. 소속 부대 내 개울에서 몸을 씻다가 찬물로 인한 쇼크로 구토를 하다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기록된 사건이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의 후임병으로, 선임병이 연병장에서 망인의 가슴을 때려 숨졌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시기여서 부대에서 사건을 단순 사망사고로 은폐·조작하였다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여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군은 망인 사망원인을 ‘찬물목욕으로 인한 쇼크로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지었으나, ① 망인의 후임병인 진정인은 ‘당시 고참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는데, 본인(망인)만 근무로 계속 빠져서 미안한 마음에 사고 그날 후임병에게 당직실 근무를 넘기고 연병장으로 집합을 나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과 함께 집합을 당한 동기병은 ‘저희 앞 기수 선임들이 저희 3~4월 군번들을 집합시켰는데, 장소는 개울가 위 3포 자리에 모였다. 당시 망인은 전입도 늦게 하였고,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화력지원통제소에서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집합에서 열외되었다. 입대 전 권투를 한 선임병 이○○이 순서대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제가 맞은 후 중간쯤에 있었던 망인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고는 바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이를 전해 들은 부대원들은 선임병의 직접 폭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폭행 당사자인 이○○ 또한 본인이 가슴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백하였다.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전문가는 ‘심각한 폭행이

아닌 1대 정도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정도의 외력에 의해 초래된 미주신경성 쇼크에 의한 급사'로 추정하였다. 부대원들의 진술과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때, 망인 사망은 군의 결론인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선임병의 폭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미주신경성 쇼크에 의한 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망원인에 대한 은폐·조작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사단 군사경찰대는 선임병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선임병을 ○사단 군사경찰대로 체포하여 약 20일 동안 구금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선임병을 군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고, ○○○포병대대는 사망 다음 날 7. 6.(월) 육군본부에 망인 사망원인을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하였고, 다음 날 7. 7.(화) 사망확인조서에 '찬물목욕으로 인한 쇼크로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기록하였다.

또한, 망인의 후임병은 '부검실에서 헌병대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부대 관계자가 유가족에게 "시신에 태극기를 덮고 나갈 것인지, 개죽음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해라"라고 하였고, 유가족이 "태극기를 덮고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 망인 사망 후 야외 화장실에 "이○○은 살인자다"라고 낙서한 병사는 통신반 일병이고, 이 낙서로 중대장은 중대원에게 "죽은 사람은 애통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함구 명령과 정신교육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단 군사경찰대는 유가족에게 망인 전사망처리와 관련하여 '구타를 당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못 간다. 연금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가족이 제한적 선택을 하게끔 회유하였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망인이 사망하게 된 배경은 병영 내에서 병사들 간 사적인 서열에 의한 고참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구타가 그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병사들의 병영 내 구타가 자행되었음에도 묵인·방관한 간부들의 안일한 대처는 병사들의 사망사고의 잠재적 배후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은 1980년대 군 사망사고 은폐·조작의 전형적인 사례로, 망인 사후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은 관리책임에 대한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사망의 진상을 은폐·조작하였다.

비록 망인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보훈 보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와 과정이 결코 정당하고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라도 군과 국가는 망인 사망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망인과 유가족에

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군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찬물목욕으로 인한 쇼크로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조작·은폐한 것을 위원회 조사를 통해 35년 만에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쇼크에 의한 급사’라고 그 진상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망인의 사망은 이미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망원인 변경과 사망사건 은폐·조작 재발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현재, 군 내 성범죄와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 군, 장티푸스 전염병으로 격리 치료하였으나 사망
- 위원회, 장티푸스는 이미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이므로 순직 요청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1960. 8. 1. 해군에 입대, 같은 해 11. 23. 대 배치되었다가 1961. 4. 26. 해군 ○○기지 보급정비반으로 파견 복무 중, 같은 달 29. 심한 복통으로 같은 해 5. 2. 진찰 결과 심한 복통과 구토증, 고도의 발열 등의 소견을 받아, 다음날인 3. ○○해군병원에 후송되어 각종 항생물질을 투여하면서 격리 치료하였으나, 7일 후인 10. 04:40경부터는 심한 탈수증세, 치조 점막에서의 출혈, 심한 구토, 의식이 혼미해져 산소흡입, 강심제 등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06:16경 호흡이 곤란해짐과 동시에 순환장애로 06:17경 사망한 사건이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이 입대 전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가족들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 사망 후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사망 통보만 한 것이 억울하다면서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1961. 5. 13. 작성된 해군 ○○병원 사망보고서에는 ‘망인은 장티푸스 전염병으로서 격리하며 절대안정과 대량의 수분공급 고단위 항생물질을 계속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돌연히 심한 발열과 호흡 장애 부정맥을 초래, 급성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심장 정지되어 사망하였음’ 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기록표에는 ‘1961. 5. 3. ○○병원에 장티푸스로 입원하여 일반사망’ 으로, 사망전말보고서와 화장완료보고서에는 ‘병사’ 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망인은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1996. 11. 30. 시행된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장티푸스는 세균, 원충, 기생충 등의 급성 감염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 장관 특히 결장의 염증성 질환

을 일으켜 고열, 복통, 혈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확인된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망인과 같이 군 복무 중 장티푸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996. 11. 30. 시행된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장티푸스와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순직 처리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4. 전사 / 직권조사

오병두 위원\*

### 사 건 명

가 진정 제597호 최종사 사건

나 진정 제1324호 정병장 사건

다 직권 제4호 곽일병 사건

라 직권 제7호 변하사 사건

\* 비상임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군, 근무 중 1953. 7. 27. 사망
- 위원회, 부대장 명의로 신고된 공문서에 근거 ○○군 ○○지구 전사 사실 인정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 망인은 1949. 7. 20. 입대, 신병훈련소 교육을 수료하고, 1950. 12. 1. 하사로 임관하여, 1953. 3. 1. ○○전투비행단 ○○정비보급전대 ○○자동차대대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27. ○○지구에서 전사하였다.

군은 당시 망인의 사망을 제적(사망) 처리하였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망인이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지금은 사망한 어머니께 전해 들었다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여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망인 사망 관련 수사기록을 공군 ○○전투비행단 법무실, 공군본부 고등검찰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관련 수사기록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 6·25 전쟁 군사기록물 「○○비 군사일지」 중, 1953. 2. 15. ~ 1954. 2. 28. 공군 ○○전투비행단 군사일지에는 망인 사망 관련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 소속부대원 27명 중 23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였는데, 19명은 사망하였고, 신원 확인된 4명에 대해 전화 조사한 결과, 장○○은 2020. 3. 27. 1차 전화 조사 시 치매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20. 9. 19. 사망하였고, 김○○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어 의사통화가 불가능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소속 부대원 양○○은 당시 자살이나 총기 오발에 의한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② 공군본부 기록물관리과에 6·25 당시 ○○전투비행단 ○○군 ○○지구 전사자 명단을 요청한 결과, 전사자명부는 없다고 회신하였고, 「공군 창군과 6·25 전쟁」 책자에 있는 6·25 전사자명부에는 망인은 없는 것으로

로 회신하였다. 망인 거주표(병적기록표)에는 인사명령 ○○비인 191에 의해, 1953. 7. 27. 제적(사망)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인사명령지를 공군본부에 요청한 결과 ‘미보존’ 으로 회신하였다.

망인 제적부에는 “1953. 7. 27. ○○군 ○○지구에서 전사, 공군 ○○전투비행단장 공군 대령 보고에 의하여 1954. 2. 9. 송부”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사망신고 서류를 ○○지방법원 △△지원에 요청한 결과, ‘자료 없음’ 으로 회신하였다.

소속 부대원 홍○○은 ‘○○전투비행단은 6·25 전쟁으로 1953. 2.경 ○○에 창설된 공군 최전방 부대로 망인이 사망한 정전협정 당일(1953. 7. 27.)에도 전투기가 폭격을 위해 출격하였으며, 당시 ○○전투비행단 소속부대원들이 전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다 사망하게 되면 6·25 전쟁 중이라 전사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군본부 군사편찬과에 확인한 결과, 정전협정 당일(1953. 7. 27.)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68회 출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 병적부에 1953. 7. 27. 사망으로 기재된 근거인 인사명령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인사명령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 망인 제적부에 1953. 7. 27. ○○군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신고 시 첨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확인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부대장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망인 사망 당일인 1953. 7. 27. 소속부대 전투기가 68회 출격한 사실이 위 제적부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은 제적부 기재 내용대로 1953. 7. 27. ○○군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망인 사망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망인 병적부에 1953. 7. 27. 사망하였다는 기재 내용과 부대장 명의로 신고된 망인 제적부에 1953. 7. 27. ○○군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다른 내용의 기록과 진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제적부의 기재 내용대로 1953. 7. 27. ○○군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5. 23. 전사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군, 국방부 병커 초병 임무 수행 중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사망
- 위원회, 국방부 B-2 병커 경계근무 중 반란군에 맞서 몸싸움 벌이다 총격당해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 망인은 1977. 7. 5. 입대, 국방부 소속 헌병으로 ‘12·12 군사반란’ 때, 국방부 B-2 병커 초병 임무 수행 중, 1979. 12. 13. 01:40경 B-2 병커로 진입하던 ○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군은 망인의 사망을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구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에 의해 피살<sup>9)</sup>된 망 중령(당시 소령) 김○○에 대한 추모사업을 하는 자로, 망인 모교인 ○○대학교의 명예졸업장 수여 등 망인에 대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육사 출신 장교인 김○○ 소령과 달리 사병이었던 망인에 대한 공적 기록이 없어 추모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망인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여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sup>10)</sup>, ① 대법원 판결문 및 수사기록에는 망인이 초병 근무 중, ○공수여단 ○대대 ○○지역대 장병들의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가 나타나 있지 않고, 매화장보고서 등 군 기록에는 망인이 ‘국방부 B-2 병커 입구 경계근무 중, 계엄군 증가 인원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실 도착 시 사망’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국방부 ○○헌병대 및 ○공수여단 장병 약 40명에 대한 대인조사,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국가기록원 보존문서 등에 대한 대물조사를 통해, 1979. 12. 12. 21:00경 진돗개 하나 경보 발령으로 전역을 2주 앞두고 있던 망인이 국방부

9) 1979. 12. 13. 01:00경 특전사 △공수여단장 최○○은 △공수 ○○대대(박○○) 병력을 동원, 직속상관인 정○○ 특전사령관실에 무단 침입, 총기를 난사하며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는 하극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사령관을 지키던 비서실장 김○○ 소령이 살해됨. 현재 위원회에서 직권 제16호로 조사 중임.

10) 망인 소속 ○○헌병대, ○공수여단 장병 등 44명을 출장·전화로 조사함.

B-2 병커 입구에 초병으로 추가 배치되었고, 다음 날 01:40경 ○공수여단 ○대대 ○○지역 대장이 약 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총격전 속에 산개하여 국방부 B-2 병커로 접근 중, 초병인 망인이 ‘우리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 총을 줄 수 없다’ 라며, 공수대원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며 공수대원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자, ○○지역대장이 사격명령을 하달, 이에 공수부대 대위가 망인의 목에 권총 1발을 근접 발사하고, 곁에 있던 수 명의 공수부대원이 가슴 부위에 M-16 소총 3발을 발사하여 현장에서 망인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당시 군사반란 세력은 불법으로 국방부를 점거하는 과정<sup>11)</sup>에서 이에 대항하는 초병인 망인에게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살해하고, 매화장보고서 등 군 기록에는 ‘계엄군 증가인원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사망’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진상을 은폐·조작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군사반란의 주범들은 1996. 12. 26.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나, 1997. 12. 22. 특별사면되었고, 망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수여단장 박○○는 육군 대장, ○공수여단 ○대대장 박△△는 육군 소장까지 진급 후 예편하였다.

반면, 당시 군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이유도 모른 채 아군끼리 교전을 벌였던 ○공수여단 대원과 국방부 ○○헌병중대 중대원들에게 ‘오인에 의한 교전이였다’ 라며 무력 충돌 이유를 합리화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군 기록에 망인의 사망 경위가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 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당시 군은 군사반란 세력에 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 로 은폐·조작하여 군사반란의 불법성과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감추었고 국가는 4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었으나, 위원회 조사를 통해 망인 사망의 구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구분을 ‘순직’ 에서 ‘전사’ 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는 전사자를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기준번호 1-5)’ 으로 분류한다.

11) 1979. 12. 12. 19:10경 보안사 인사처장 허○○ 대령 등이 수경사 ○○경비단 소속 헌병 65명을 동원, ○○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불법 침입, 계엄사령관 정○○ 대장을 보안사 서빙고보안분실로 강제 연행하고, 12. 13. 자정 박○○가 지휘하는 ○공수여단은 군수뇌부인 국방부와 육본을 무력으로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함.

- 군, 망인에 대한 관리소홀은 있었으나 부대적 요인과는 무관
- 위원회,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형식적으로 대처한 지휘관과 간부들 책임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 망인은 2013. 4. 9. 입대, 우울 증세 등으로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소속대 통합막사 3층 계단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쓰러져 있는 것을 선임병이 발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 등 치료 중 약 18일 만에 ‘중증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군은 망인의 사망을 일반사망(자살)으로 구분하였다.

### 2) 진정 요지

망인은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휴가 중 자가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을 유가족이 부대에 통보한 후, 특별관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사망원인을 군이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그 진상을 밝혀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보충대 및 자대에서 실시한 신인성검사결과, 국군△△병원 심리평가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며, 신경이 과민함. 현재 혹은 최근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자살 의도를 엿볼 수 있음.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갑작스럽게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임’ 등으로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부대 간부들은 총 88회(평균 2.2일 1회) 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였고, 외부병원 진료를 위한 청원휴가, 국군△△병원 정신의학과 진료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② 부대 전입 직후부터 부대 지휘관은 망인을 A급 관심병사로 선정 및 전우조 편성, 평균 2.2일 간격으로 면담 및 관찰하였다. 또한, 2주간의 비전 캠프 입소 및 행정병 보

직변경 조치하였다. 하지만 비전 캠프 군중부의 그린캠프 입소 소견을 이행하지 않은 점,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부치지 않은 점, 우울증 진단 시 병원에 입원 치료를 시켜야 한다는 육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망인은 부대 생활 중 사소한 실수에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감별 불능 신체형 장애, 중등도의 주요우울장애, B군 성격장애의 진단이 확인되었고, 입대 직후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역을 요구하였으며, 휴가 중 자살을 시도한 경험 등 현역부적합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였다.

위원회 심리부검 결과, ‘망인은 당시 전반적으로 현역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확인하였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보충대 시절부터 망인의 우울증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자대 전입 이후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망인의 심신에 대한 증상은 물론, 자살미수, 자살 언급 등 사전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음에도, 형식적인 면담 및 기록정리에만 치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입원 치료 및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 규정상의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지휘관의 지휘·감독 소홀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특히,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군 간부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제한요인이 많다. 또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보아 망인처럼 정신질환이 있어서 일반인이 판단하게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함으로써 소속 부대 간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 경찰, 강제 전역 등의 이유로 자살
- 위원회,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 이전 사망으로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

### 1) 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망인이 2017. 3. 1. 하사로 임관, 군 복무 중 성확정수술(2019. 11. 29.)을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조치되었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던 중 자신이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 2) 진정 요지

망인은 자신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0. 8. 11. ○○지방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 사망 후 ○○지방법원은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망인 사망 시점이 의무복무 만료일 이전일 가능성 등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망과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3) 위원회 조사결과 규명된 사실

위원회 조사결과, ① ○○○○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당시 변○○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는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음경상실, 고환결손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 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망 변○○에 대하여 한 2020. 1. 23.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망



인에 대한 전역처분이 부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② 망인의 사망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한 망인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망 추정시간을 2021. 2. 27. 04:25경~21:25경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한 점, 위원회에서 진행한 법의학 자문 결과, ‘망인의 사망 시각은 핸드폰 사용 정보를 통해 확인된 2021. 2. 27. 17:43:12경~21:25경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시점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인 2021. 2. 28. 24:00경 이전인 2021. 2. 27. 04:25경~21:25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전역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망인이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 자살사고가 늘어나고 자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참고인들도 망인이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 괴로움을 호소하였고, 몇 차례 자살을 암시하거나 시도하는 등 전역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살 위험성을 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망인이 2020. 1. 자살사고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이 전역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우울감 악화, 자살사고가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의 악화는 업무 배제 및 전역조치와 관련성이 높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심리부검에서도 망인의 전 생애 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인 자살 위험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강제전역과 군 복귀의 좌절은 삶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게 한 결정적 촉발 요인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전역처분을 받은 후 자살사고가 시작 또는 늘어났고, 우울감 또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④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가사 생애 전반적으로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는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역 처분이 있었고, 이를 기회로 자살사고가 다시 시작되거나 늘어났으며, 궁극적으로 자해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망인의 사망과 부당한 전역 처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위원회 결정의 의의

군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군인의 성이 무엇이나는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성확정수술 및 이와 유사한 시술 등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확정수술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 또는 신분 조건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의 사유로 피해를 입는 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다양한 성적 지향이 존중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2022. 4. 25.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